



요약

감독당국은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였음. 감독규정은 (i) 허위 입원 및 허위 수술 관련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요양기관 현황 자료, 요양급여 심사 자료, 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자료를, (ii)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 관련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 절차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음

- 감독당국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및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제정하였음
 - 감독규정의 핵심은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자료제공요청권의 범위를 확대한 것임
 - 시행세칙은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 보험료 환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음
- 감독규정 제정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됨
 -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기타 기관·단체에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동법 제5조의3)
 - 자료제공 요청 대상인 기관·단체 및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은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으로 6개 기관¹⁾을 열거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로 8가지 항목²⁾을 열거한 후, '그밖에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이번에 제정된 감독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상 (i)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 (ii) 요양급여 심사에 관한 자료, (iii) 요양기관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자료를 자료제공 요청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음

1)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② 국민연금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⑤ 한국교통안전공단, ⑥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보유한 공공기관

2)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급여 제한,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②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환수, 장애등급 결정, 급여 제한에 관한 자료, ③ 도로법상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CCTV 영상정보,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장애급여 지급, 보험급여 지급 제한,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⑥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상 보험금 지급 및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⑦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검사를 받는 공제조합의 보험금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자료, ⑧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

-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는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자료로 요양기관의 실제 운영 여부와 규모(병상, 인력)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고, 요양급여 심사에 관한 자료 및 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자료는 요양급여 지급이나 제한 여부에 관한 결론에 더하여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 및 현지 조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 감독규정 제정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허위 입원, 허위 수술 등 의료 관련 보험 사기행위 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감독규정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원부도 요청 가능 자료에 추가하였는데,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 정보 등을 파악함으로써 허위 차량 도난 신고에 대한 조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보험금이나 공제금 지급에 관한 자료와 CCTV 영상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주로 자동차 사고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감독규정 제정을 통해 자동차등록원부도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허위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자동차를 중고 거래상에게 처분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 보험료 환급 관련 세부 절차도 마련됨

-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고일시, 차량번호 등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 사건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이러한 피해사실을 통보하면 통보받은 보험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고지 대상자에게 피해사실을 고지하여야 함(감독규정 제4조, 시행세칙 제4조)
 -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기소유예결정의 경우³⁾)를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사실 고지의무 발생 요건 및 시기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보험개발원을 거쳐 피해사실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 발생 시점과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 시점에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피해사실 통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자동차보험사기 관련 보험료 부당 할증 정보도 보다 체계적으로 집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피해사실 통보 기한을 15영업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한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의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홈페이지 공고나 변경된 주소 확인 후 재고지 절차 등도 마련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고지를 받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받는 경우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함(시행세칙 제5조)

○ 이상과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이 마련됨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이 더욱 제고되고,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의 권익 구제 절차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3) 일반적인 불기소 처분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의 도주 등의 사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보험사기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음